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승 수 의원)

의안 번호	24-72
----------	-------

발의년월일: 2024. 5. .

발의자: 김승수,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오욱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를 추가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 추가(안 제4조제3호, 제4호)

- 생활환경의 정의에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추가
-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

나. 제명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부터 제24조)

3. 관계법령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5. 17. ~ 2024. 5. 23.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는”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폐기물”을 “폐기물,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먼지”를 “먼지,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구전체”를 “지구 전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전과정”을 “전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열람 할”을 “열람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생활화 할”을 “생활화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환경기본 시책”을 “환경보전시책”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공환경 시설”을 “공공환경시설”로, “유지 관리”를 “유지·관리”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용·에너지”를 “이용, 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사업”을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상 할”을 “보상할”로 한다.

제21조 중 “공개 할”을 “공개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3조 중 “관계기관”을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③ (생략)</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u> ----- ----- ----- -----.</p> <p style="padding-left: 20px;">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의) ----- -----.</p> <p style="padding-left: 20px;">1. 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3. -----</p>

소음·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생략)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략)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 폐기물,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

4. -----

----- 먼지,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

5. (현행과 같음)

6. -----

----- 지구 전체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 과정 -----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생략)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적극
적으로 -----
-----.

제7조(구민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열람할 -----.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

----- 생
활화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
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
다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

1. 2. (생략)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
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5.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
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
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
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

-----.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

----- 서울특
별시 마포구 환경기본계획-----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환경보전시책 -

4.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 공공환경시설--
----- 유지·관리--
-----.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
진) ① -----

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②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② (생략)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환경상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22조(구민참여 등) ① (생략)

----- 이용, 에너지-----

-----.

② -----
----- 그
밖의 사업-----
-----.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상할 -----.

제21조(정보의 공개) -----

----- 공개할 -----.

제22조(구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 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환경조사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③ (생략)

②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
-----.

③ -----

----- 범위 안 -----
-----.

④ -----
----- 운영 등 -----
-----.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 그 밖의 관계기관 -----
-----.

제24조(환경조사 등) ① -----

----- 지역 내 -----
-----.

②·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환경’의 정의 추가 및 제명, 띄어쓰기 등 표기 정비로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박은영
연 락 처	02-3153-9255